

대구예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규정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0.03.09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, 심의하기위하여 설치한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타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학생처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신문방송국 주간, 학부장 및 전공 주임으로 한다. 간사는 1인으로 한다. 단, 부의 안건에 따라 전공별 지도교수를 출석케 할 수 있다.(개정 2020.03.09.)(개정 2022.08.01.)

③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 (회의)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 (심의 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체 학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
2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5조 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.

제6조 (회의록) 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 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